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27
----------	------

제안년월일 : 2019년 12월 17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송도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0호), 이영실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5호),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31호)을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2019.12.17.)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송도호 의원 외 9명, 이영실 의원 외 11명,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 조정, 교통사업자의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 근거 마련, 학교 및 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교통지도반 운영 권고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인 바,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안 제15조제1항제1호)
- 나.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내외부에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는 조항 신설 (안 제18조제4항)
- 다. 시장이 학교 및 복지시설의 장 등에 대하여 교통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의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접근성”을 “접근성 및 교통안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16조제3항 중 “법 시행규칙 제5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을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내외부에서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및 문의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교통안전 지도)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판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였던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접근성 및 교통안전</u> ----- ----- -----.</p>
<p>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p> <p>2. ~ 4. (생략)</p> <p>② (생략)</p>	<p>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 -----.</p> <p>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u>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② (생략)</p> <p>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는 법 제16조제1항과 <u>법 시행규칙 제5조</u>를 기준으로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정한다.</p>	<p>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u> ----- -----.</p>
<p>제18조(<u>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u>)</p> <p>① ~ ③ (생략)</p> <p><u><신 설></u></p>	<p>제18조(<u>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등</u>)</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u></p>

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내외부에서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정보) ①
(생략)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와 「철도건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철도의 역사에 설치된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등이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게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제19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교통안전 지도)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판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